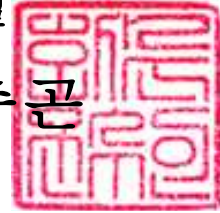


제 2957호	화순군공보	발행일 : 2020년 8월 4일 발행인 : 화순군수 발행처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							
차 례									
훈 령									
화순군 훈령 제396호		화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고 시									
화순군 고시 제115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3							
공 고									
화순군 공고 제2020-1171호		남평-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4							
화순군 공고 제2020-117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							
화순군 공고 제2020-1174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6							
화순군 공고 제2020-1188호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7							
화순군 공고 제2020-1191호		지방세외수입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8							
화순군 공고 제2020-1194호		차량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11							
화순군 공고 제2020-1196호		강제처리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2							
화순군 공고 제2020-1198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13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란									

화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8월 4일
화순군수 구충곤



화순군 훈령 제396호

화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화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제50조에 따른 권고 및 의
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
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제50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u>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504-8 외 9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8건, 폐지 2건)		불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남평~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2차,20수용0646」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7. 28.

화순군



- ☐ 사 업 명 : 남평~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 ☐ 열람기간 : 2020.7.28. ~ 2020.8.11
- ☐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처
- 화순군 건설과(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현길 23), ☎061)379-3752
- ☐ 의견제출기간 : 2020.7.28. ~ 2020.8.11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산119-2번지 등 총18필지(5,768㎡)
- 토지소유자 : 박*년(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무포리 71)등 18명
-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378-10~12 번지) 매실 등 총7건
-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우편물(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29.

화 순 군



1.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김○○(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등 62건(별첨 참조)
3. 공고기간 : 2020. 7. 29. ~ 8. 12.(14일간)
4. 문 의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061-379-3463)
5. 안내사항

가.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시고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소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증명서, 폐차증명서 등)를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3, FAX 061-379-38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자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29. ~ 2020. 8. 1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자명	주인(법인)등록번호	납부자 주소	내용	송달불능사유	비고
	대	상 자	별	첨	

4.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서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압류예고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화순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061) 379-3155

2020. 7. 29.

화 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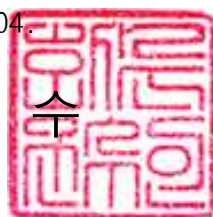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 08. 04.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0.08.04.~2020.08.29.(25일)
3. 의 견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번지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 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어려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내지 제79조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5일

화 순 군 수



----- 다 음 -----

1. 매각대상물건(차량) 및 공매예정가격 : 1대

- 39오8574 [쏘나타(SONATA)] , 2012년식 : 300,000원

2. 공매공고 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0년 8월 24일(월) ~ 2020년 9월 2일(수) 24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마감일시 : 2020년 9월 2일 24시 (보증금을 입금 후, 입찰참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0년 9월 3일 14시 이후
(주)오토마트(www.automart.co.kr) 인터넷공매의 결과조회에 게시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 (주)오토마트 인터넷 입찰 (www.automart.co.kr)

4. 배분요구 종기일 : 2020년 8월 21일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액의 10% 이상.

(기한내 미입금 시 입찰 참가자격이 취소됨)

다.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부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 668-01-005470, 예금주 : 화순군청**

라.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

마. 낙찰되지 않은 자의 공매보증금은 모두 이자없이 반환(계좌이체).

바.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사. 국세징수법 제72조(공매참가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할 수 없음.

아.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모든 행위는 취소됨.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

나.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다.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단독입찰 가능)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최고기한 10일)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최고기한 10일)에 잔(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조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9.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공부기재사항과 차량점검서상의 표시착오,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화순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 하에 공부열람과 반드시 현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당 약 15,000원 정도)
- ※ 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락받은 자동차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차량보관장소 : 오토마트 광주보관소
- ※ 본 공고상 내용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차량공매담당자](#)(☎ 061-379-315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4항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폐문부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내용	송달지	반송사유
차량번호	성명				
강원30라2774	홍*영	김*주	저당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	수취인불명
10버1773	유*회사 다*아*븐	정*연	저당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224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20년 8월 4일 ~ 2020년 8월 19일
4. 말소등록 예정일: 2020년 8월 24일 이후(강원30라2774)
2020년 8월 31일 이후(10버1773)

5. 기타사항

-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말소등록 예정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말소등록**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화 순 군



공 시 송 달 공 고

무단방치로 인해 강제처리(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등록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강제처리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0. 8. 4. ~ 2020. 8. 19.

자동차번호 (차명)	소유자	송달지	말소촉탁일자 (폐차인수일자)	촉탁기관
광주89나2267 (스타렉스장축6밴)	최*호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부처샘길 *-*	2020.7.20. (2020.7.16.)	화순군 재난안전과 -59067(2020.7.20.)

3.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 직권말소가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1)

2020년 8월 4일

화 순 군 수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 08. 04.

화 순 군 수



1. 공 고 내 용 :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수시분)부과 반송분 공고
2. 공 고 기 한 : 2020.08.04.~2020.08.29.(15일)
3. 공 고 대 상 : 2020.07.01.~2020.07.31.반송분(7월) / 내역 별첨
4. 문 의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061-379-3785, 3786, 3788)
5. 기타 안내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화순군청 재난안전과교통안전팀(☎061-379-3788)에서 고지서를 발급(가상계좌납부 가능)받아 시중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고지의 발부 후 독촉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기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자동차등)이 압류됨을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반송내역 1부.